

91. 11. 16

유럽공동체 회원
국들은 최근 여성에게
14주(98일)간의 산전산후
유급휴가를 준다는 협정에 동
의했다. 이 협정은 또 임신 여
성에게 안전
한 작업조건
을 제공하고
임신과 관련
된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는
내용을 담고 있다.

이 협정은 지난 6일 브뤼
셀에서 열린 유럽공동
체 사회복지장관

회의에서 이뤄졌는데, 이날 회
의에서는 산전산후 휴가지 임
금은 최소한 임금 총액의 75%
이상이어야 한다는 성명서도
채택됐다.

EC 여성 출산휴가 14주 합의

그러나 93년 1월부터 시행되
는 이 협정으로 실질적인 혜택
을 받는 여성은 12개 유럽공동
체 회원국 중 영국·아일랜드·
포르투갈 등 3개국 여성뿐이다.

나머지 9개국에
서는 이미 임금의 거의
전액을 지급하는 14주간의
산전산후 휴가를 보장하고 있
다. 이런 까닭에 유럽공동체
사회복지위원
회 바소 파판
드레우 위원
장은 "임금
전액을 지급한다는 유럽공동체
집행위원회의 원안이 채택됐어
야 한다"고 아쉬워했다.
<브뤼셀=AP 연합 특
약>

91. 8. 11

취업여성 취학전 자녀 보육비 보사·재무부 소득세 감면추진

취학 전 자녀를 둔 취업여성이
자녀를 보육하는 데 쓴 비용을
소득세에서 감면해주는 방안을
최근 보사부와 재무부가 협의하
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.

협의 내용의 주요 뼈대는 △취
학 전 자녀를 둔 취업여성의 자
녀보육비용을 연말 세금정산 때
소득세에서 감면해주고 △직장탁
아소를 설치한 사업체에 대해 탁
아소 설비비는 손비처리, 운영비
는 법인세법에 따라 세금을 감면
해주는 것이다.

이 가운데 직장탁아소 설비비
의 손비처리, 운영비의 법인세법
에 따른 세금감면 처리는 별 무
리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나,
자녀 보육비의 세금감면은 상한

액을 얼마까지로 할 것인가를 둘
려싸고 진통이 예상된다.

9일부터 시행된 영·유아보육법
의 후속조처로 소득세법, 법인세
법 개정을 추진중인 보사부 가
정복지과 김기업 심의관은 "영·
유아보육법이 취학 전 자녀를 둔
취업여성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
도록 세법 개정을 추진중"이라면
서 "자녀 교육비와 의료비 지급
내역 증빙서류를 내면 연말 세금
정산 때 감면받듯이 취학 전 자
녀 보육비도 연말 세금정산 때
감면받을 수 있게 할 계획"이라
고 밝혔다. 그러나 보육비 등이
증빙서류로 갖춰지기 어려운 점
등이 있어 재무부와 협의하고 있
다고 김 심의관은 말했다.